

▣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2020년 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현 행	개 정 안	사유
<p>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 본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학칙'이란 대학의 학교규칙을 의미한다.</p>	<p>개정사유 규정문구의 분명화</p>
<p>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평의원은 응지세무대학 전임교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응지세무대학 정규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p>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평의원은 응지세무대학 전임교원으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응지세무대학 정규직원으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p>자격의 분명화 근속기간의 분명화</p>

<p>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p>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p>4. 동문 평의원은 본교졸업생이면서 평의원으로서는 연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p> <p>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평의원으로서는 연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자</p> <p>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p>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p>⑤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의 근속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평의원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채용 이후 정규직원이 되기 직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교원평의원인 경우 최근 2년 내에 휴직한 경우 최근 2 	
--	--	--

	<p>년 내에 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로 한다.</p> <p>3. 교원평의원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전임교수 외 재직(겸임, 초빙, 특임, 명예)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제5조(추천 및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교수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p> <p>2. 직원은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p> <p>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p> <p>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제5조(추천 및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p> <p>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학)처장이 소집한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한 후 교무(학)처장에게 추천받아 위촉한다.</p> <p>2. 직원은 대표하는 평의원은 사무처장이 소집한 전체직원회에서 선출한 후 사무처장에게 추천받아 위촉한다.</p> <p>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선출한 후 총학생회장에게 추천받아 위촉한다.</p> <p>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구성단위 전체회의 소집권자를 명문화</p>
<p>제6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을 둔다.</p> <p>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p> <p>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 유고시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를 대리한다.</p>	<p>제6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p> <p>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p> <p>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이 개인사정등으로 유고시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을 새로 호선한다.</p> <p>④ 의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의의 소집은 부의장이 하고, 부의장도 유고시엔 최연장자가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호선한다.</p>	<p>회의 소집권 및 소집권자 유고시의 상황을 규정화</p>

<p><없음></p>	<p>제6조2(평의원회 간사) ① 평의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의 장에게 요청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③ 간사는 의장과 협의하여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자료 준비등의 대학평의원회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p>	<p>간사규정 삽입</p>
<p>제7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된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p>	<p>제7조(평의원의 임기 등)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연해촉된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가 자격상실한 날부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 평의원을 선출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단, 재적의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의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③ 대학의 장은 본조제2항에 따라 평의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기만료로 새로운 평의원을 위촉해야 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에 요청해야 한다. 2.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평의원을 위촉해야 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단위에 요청해야 한</p>	<p>임기 등 분명화</p>

	다.	
<없음>	<p>제7조2(학생의원에 대한 특례) ① 학생의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만료 후 추천하는 구성단위의 재추천을 받아 학생의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p> <p>② 학생의원을 제5조에서 정하는 추천 구성단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추천하는 구성단위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학년대표로 각 2인으로 구성된 학생단체 2. 각 학부(과)대표로 각 3인으로 구성된 학생단체 3. 학생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 <p>③ 본조2항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구성단위도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해당 구성단위와 대학내 학생관할부서가 협의하여 후보자를 정한 후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학생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 때 대학의 장은 해당선출자를 학생의원으로 위촉한다.</p> <p>④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의원추천 구성단위에 속한 자 2.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대의원회에 속한 자 3.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학생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p>④ 본조의 제2항과 제3항은 제5조에서 정하는 구성단위가 구</p>	<p>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모든 의결이 지체된 적이 있어 그럴 경우를 방지하고자 규정삽입</p>

	<p>성되지 않을 경우에만 임시로 적용하며, 제2항, 제3항을 통해 위촉된 학생의원의 임기는 해당 구성단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학생의원을 추천하여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p> <p>⑤ 본 조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구성단위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학생의원의 동의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p>	
<p>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③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③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④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중 최연장자가 본조에서 정한 의장의 역할을 대리한다.</p> <p>⑤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일 경우에 한해 대학의 장이 회의를 소집한다.</p>	<p>의결 정족수 완화로 평의원회 의결 권한 강화 및 식물화 방지</p>
<p>제8조의2(실비지급)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일에 대하여 외부의원은 일십만원, 내부의원은 삼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p>	<p>제8조의2(실비지급) 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일에 대하여 교외의원은(동문 및 대학발전의 도움이 될수 있는 자) 일십만원, 교내의원(교원, 직원, 학생)은 삼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p> <p>② 성원이 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비</p>	<p>회의비 지급조건 분명화</p>

	를 지급하지 않는다.	
<p>제9조(회의록 작성)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의록 작성)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p> <p>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교외의원에 한해 의장이 대표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표서명을 위한 동의서를 회의록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출석의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회의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회의록 작성의 업무상 어려움 완화
<p>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비밀유지)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밀사항이란 각 회의 개최마다 의결하여 정하며 해당 기밀사항과 관련되어 법령에서 정함 또는 행정부 처분이 있을 경우 의결에도 불구하고 기밀로 보지 않는다.</p>	규정문구의 분명화
<p>제12조(추천위원회 선발 및 추천) ①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3인의</p>	<p>제12조(추천위원회 선발 및 추천) ①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3인의</p>	후보인별 찬부방식의 표결은

<p>위원(이하 추천위 위원)을 대학구성원(재학생, 재직교원 및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p> <p>② 평의원회 의원은 추천위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학구성원은 평의원회 의원을 통해 추천위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평의회 의원 1인당 2인 이내로만 추천할 수 있다.</p> <p>③ 평의회는 추천위 위원 후보자 별로 추천여부를 무기명투표하여,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점 순으로 3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추천위 위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재추천부터는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자 중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다수 후보자 중 선발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선발한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p> <p>④ 추천위 위원 후보자 추천공고는 평의원회에서 7일 이상으로 정하며, 공고문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학구성원에게 학내 주요게시판에 후보자추천을 공지해야 한다.</p> <p>⑤ 개방이사(감사) 추천기간 중에는 추천위 위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p>	<p>위원(이하 '추천위원')을 대학구성원(재학생, 재직교원 및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p> <p>② 평의원회 의원은 의원별로 2인 이내의 추천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평의원 의원의 1인 1표 방식의 표결 후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위 위원 3인이 선출된다.</p> <p>③ 득표수가 동일한 추천위 후보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발하며, 결선 투표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위원을 결정한다.</p> <p>④ <삭제 2020.08.XX></p> <p>⑤ <삭제 2020.08.XX></p>	<p>극단적으로 다수에 유리한 방식임 1인 1표제를 통하여 소수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선출가능성을 열어둠</p>
<p>제12조의2(개방이사 추천 및 선발) ① 개방이사 추천위 의장은 10일 이상의 후보자추천 기간을 정해서 개방이사(감사)의 자격요건 및 기준, 대학구성원의 추천방법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학구성원들에게 후보자 추천기간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교내 주요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p>	<p><삭제></p>	<p>추천위 규정은 평의원회 규정으로 둘 수 없음 (교육부 2019년 12월 법인운영지침 참조)</p>

② 개방이사(감사) 추천후보자는 추천위 위원이 직접 또는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추천해야 한다. 추천서 양식에는 피추천자 성명, 나이, 현직, 주요경력, 추천사유, 추천자 등 필수 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천서로 피추천자를 추천 의뢰받은 추천위 위원은 반드시 추천위에 피추천자를 추천해야 한다.

③ 추천위는 후보자 중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등에 정한 결격사유, 본교 교직원으로 재직여부 등 법이 정한 이사자격의 부적격여부를 판정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적격인 후보자를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견 내용 중 본 법인의 전직 이사(감사)로서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력, 형사범으로 기소중인 상태 등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공시기간이 끝나면 추천위는 취합한 의견서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천을 완료한다. 추천이 완료되면 추천위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학평의회 의원과 대학구성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는 후보자 중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등에 정한 결격사유, 본교 교직원으로 재직여부 등 법이 정한 이사자격의 부적격여부를 판정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적격인 후보자를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견 내용 중 본 법인의 전직 이사(감사)로서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력, 형사범으로 기소중인 상태 등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공시기간이 끝나면 추천위는 취합한 의견서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천을 완료한다. 추천이 완료되면 추천위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학평의회 의원과 대학구성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학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본조의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관할청

규정문구의 분명화

	의 명령 등으로 인한 규정개정만 있는 경우는 본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부 칙 <개정 2020.08.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8.XX.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서 평의원의 자격, 선출, 임기 등에 대한 개정(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은 2020년 6월에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보궐의원 선출부터 적용한다.